# 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|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합 계 | | | 8,872,347,450 | 266,170,424 |
| 일 반 회 계 | | | 7,844,338,018 | 235,330,141 |
| 특 별 회 계 | | | 1,028,009,432 | 30,840,283 |
| | 기 타 특 별 회 계 | | 1,028,009,432 | 30,840,283 |
| | | 농 어 촌 주 택 사 업 | 5,945,000 | 178,350 |
| | | 의 료 급 여 기 금 | 618,205,578 | 18,546,167 |
| | | 동 부 권 | 36,693,370 | 1,100,801 |
| | | 학 교 용 지 부 담 금 | 15,609,580 | 468,287 |
| | | 소 방 | 350,448,904 | 10,513,467 |
| | | 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 지 역 자 원 시 설 세 | 1,107,000 | 33,210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,601,615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244,1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